

의안번호	2215737
의 퇴 인	박수영의원
회 답 일	2026. 2. 19.
추 계 번호	25B6131

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2조(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)	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<u>개인하수도의 설치·변경 또는 폐지에</u>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2조(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)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가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개인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개인하수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,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현행법 제32조제1항¹⁾에 따르면, 국가는 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개인하수처리시설은 「하수도법 시행령」 제24조²⁾에 따라 건물등에서 발생

1) 제32조(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) ①국가는 개인하수도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2) 제24조(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)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하수처리구역 밖

가.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·시설 등(이하 “건물등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(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할 것

나.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(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설치할 것

2. 하수처리구역 안(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):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

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‘오수처리시설’과 건물등에 설치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‘정화조’로 구분됨

- 「2024 하수도 통계」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오수처리시설은 총 587,429개소(하수처리구역 내 66,968개소, 하수처리구역 외 520,461개소)이며, 정화조는 총 2,128,810개소(하수처리구역 내 1,552,930개소, 하수처리구역 외 575,880개소)임
- 다만,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6년 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국가의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음
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, 국가가 개인하수도의 설치뿐만 아니라 변경 또는 폐지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개인하수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필요한 지원의 규모와 지원 방법·범위·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, 현시점에서는 해당 정보들을 알 수 없어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nabo.go.kr